

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(제109조의3제3항 및 제4항 관련)

1.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·법인·단체

- 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
- 나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- 다.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
- 라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- 마.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
- 바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
- 사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과 대학원
- 아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
- 자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사시설
- 차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- 카.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사업장의 사용자
- 타. 「선원법」에 따른 선박소유자
- 파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- 하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「보험업법」, 「선주상호보험조합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
- 거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, 「한국해운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원양산업발전법」, 「민법」 및 「선원법 시행령」 제32조제5호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기관
- 너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
- 더.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
- 러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
- 머.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
- 버. 그 밖에 공단이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·법인·단체

2.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

- 가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
- 나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다.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및 「별정우체국법」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

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

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

마. 「국세기본법」, 「국세징수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 및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득·과세·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·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

바.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사업장 성립·적용·탈퇴·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(고용)·상실(고용종료) 등 부과·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,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, 구상권에 관한 자료

사. 「민법」, 「비송사건절차법」, 「상법」 및 「상업등기법」 등에 따른 법인등기와 「소득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

아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료

자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선원법」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

차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「보험업법」, 「선주상호보험조합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, 지급에 관한 자료

카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, 「한국해운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원양산업발전법」, 「민법」 및 「선원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

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,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,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자료 및 「여권법」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

파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생에 관한 자료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에 관한 자료,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및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입소 등에 관한 자료

하.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에 관한 자료,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한 자료 및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에 관한 자료

거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, 「부동산등기법」 및 「건축법」 등에 따른 건물, 「선박법」 및 「어선법」에 따른 선박 및 어선,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

- 계,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·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
- 너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대장, 「축산법」에 따른 축산업등록 등에 관한 자료, 「수산업법」·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어업·양식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자료
- 더.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·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
- 러. 「의료법」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변사체 신고 자료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매장· 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
- 머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·갱신에 관한 자료
- 버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자료
- 서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의 다문화가족 자료
- 어.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관한 자료
- 저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노무제공자 자료 및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
- 처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등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료
- 커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자료
- 티. 「공인중개사법」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자료(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)
- 퍼.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관한 자료
- 허. 「재외국민등록법」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자료
- 고. 「국적법」에 따른 국적상실·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
- 노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, 개시결정일, 면책결정일, 당사자내용 등에 관한 자료
- 도. 「가사소송법」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사건번호, 종국결과, 당사자내용 등에 관한 자료
- 로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재가급여 수급자에 관한 자료
- 모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조·구급활동에 관한 자료
- 보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, 해양경찰청 등이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
- 소.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, 수사의뢰 또는 그 밖의

조치에 관한 자료

- 오.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·활용되는 신용정보 중 법원의 개인회생·파산선고·면책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자료
- 조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
- 초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
- 코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에 관한 자료
- 토.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 관한 자료
- 포.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라 구축·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관한 자료
- 호. 「형사소송법」 제222조 및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처리한 변사사건의 변사자 신원 내용에 관한 자료
- 구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별표 2의3제1호에 따른 기관·법인·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